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45772(본소), 2015다45789(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45772(본소), 2015다45789(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33267(본소), 2014나33274(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7. 29 선고 2013가단440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A

피고(반소원고), 상고인B

판결 선고 2015. 11. 27.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나33267(본소), 2014나33274(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본소 주장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